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장성급장교의 별도정원 운용이 가능하도록 군인사법이 개정(2014. 04. 13.)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장성급장교의 별도정원을 운영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어, 국가적 주요사업 추진 및 외교 및 안보 목적 상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여 별도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정원에 대한 인건비 추가 편성 필요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05. 00. ~ 06. 00.)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법 제1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직위에 6개월 이상 보직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3(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①·② (생략)	제14조의3(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③ 법 제1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영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직위에 6개월 이상 보직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2개월 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
<u><신 설></u>	<u>④ 제3항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연 락 처	(02) 784 - 5124